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檢討報告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3. 8. 28.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01호로 2023년 8월 11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 안정을 통한 다자녀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책무(안 제3조 ~ 제4조)

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우대 및 지원(안 제5조 ~ 제6조)

라. 우대 및 지원중단, 포상(안 제7조 ~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 시행령」, 「건강가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8. 8. ~ 2023. 8. 12.):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 및 생활 안정을 통한 다자녀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이고 9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구민, 구에 소재하는 단체 등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우대 및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포상과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1]이 0.78명으로,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임.
- 심각해지는 초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다자녀가정으로 정의하면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을 통해 다자녀가정의 양육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하였고, 이와 함께 구청장, 구민,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 등의 책무와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참고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2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